

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13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이상식 · 박선원 · 이병진
이재강 · 문대림 · 임호선
김문수 · 부승찬 · 박정현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보수·징계·직무·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보수·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보수·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

름.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수정함.

주요내용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징계·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보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등의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짙은 부분 외에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검찰인사위원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밀실인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력을 강화시킴(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승진·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안 제26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검찰공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인사·보수·징계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공무원의 구분 등) ① 검찰공무원은 검사(檢事) 및 일반검찰로 한다.

② 검사와 일반검찰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차별적 대우의 금지) 검찰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4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5조(검사의 보직 등) ①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보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일반검찰의 보직 등) ① 일반검찰의 보직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공무원의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의 검찰공무원의 신규채용·파면·면직 및 해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의 재직 중인 검찰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찰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검찰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의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신규 채용

제8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검사의 임명)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제10조(일반검찰의 신규채용) 일반검찰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일반검찰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시보 임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는 1년, 6급 이하의 검찰공무원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검찰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3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13조(채용후보자 명부) 검사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일반검찰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장 인사

제14조(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 ① 검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검사 2명. 다만, 제17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

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일반검찰 2명

3.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3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4. 국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2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검찰공무원의 임용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
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

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16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7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국회 입법차장

5. 대한변호사협회장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임용)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15조의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18조(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15조의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4조의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14조의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0조(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
용된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
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27조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
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으로 본다.

제21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제17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
장은 7년 이상 제15조의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2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공무원)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검찰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의 검찰공무원(이하 “고위
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

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검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다만, 그 직무의 중요도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하여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으로 본다.

제23조(검찰공무원 자격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이상에 최초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심

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검찰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교섭능력, 업무수행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의 응시횟수는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의 응시가 제한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자격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격심사의 요소·시기 및 심사방법, 검찰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격심사의 응시횟수 제한, 재응시 제한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관장 자격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기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기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기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기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기관장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기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검찰공무원의 승진) ① 검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직위 및 계급에 있는 검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부이사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5급 이하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4급 이하의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직위별 및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검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검찰공무원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검찰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찰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2명
2. 국회가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5.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③ 검찰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검찰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찰공무원의 퇴직을 건의한다.

④ 검찰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찰공무원에게 검찰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찰공무원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검찰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검찰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찰공무원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재직연수의 합산) 제15조·제17조 및 제21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제30조(직위의 정급) 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검찰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복무

제31조(정치 개입의 금지) 검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32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검찰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검찰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검찰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검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대통령비서실 파견 금지 등) ① 검찰공무원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검찰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5장 징계

제35조(징계 사유)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은 소속 검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또는 제3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6조(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징계의 절차) 검찰공무원의 징계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가 한다.

제6장 권익의 보장

제38조(의사와 다른 신분조치) 검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와 다른 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아닌 자로서 제30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공무원과 제22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재직하는 검찰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한 소청) 검찰공무원은 위법·부당한 해임, 면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제40조(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① 제39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검찰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3호봉 이상의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일반검찰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검찰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검찰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따른 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에 따라 위원 중 7급 이하의 일반검찰을 둔다.

1. 총 위원 수 5명: 위원 중 7급 이하의 일반검찰 최소 2명

2. 총 위원 수 7명: 위원 중 7급 이하의 일반검찰 최소 3명

3. 총 위원 수 9명: 위원 중 7급 이하의 일반검찰 최소 4명

④ 중앙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및 검찰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검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① 검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에 검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검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3호봉 이상의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검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검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수

제42조(보수) 검찰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실비변상) 검찰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제8장 능률

제44조(교육훈련) ① 검찰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고,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검찰공무원의 기능별·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찰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46조(정치운동죄) ①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7조(직권남용죄)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8조(벌칙) ① 제32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장 보칙

제49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검찰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경우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사유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